

차의과학대학교 대학평의원회		2016년도 제4차 회의록	
일 시	2016. 11. 23.(수) 14:00 ~ 15:00	장 소	CHA BIO COMPLEX B113
참석의원	문창진 의원, 정광희 의원, 김진경 의원, 임지영 의원, 박재범 의원, 오일숙 의원, 최근영 의원		
불참의원	황태선 의원, 배진건 의원, 장용석 의원, 최설 의원		
간 사	강창호 기획실장, 경희수 기획실 사원		

I. 안 건

- 차의과학대학교 학칙 개정 심의
- 의학전문대학원 학칙 개정 심의
- 제대학원 학칙 개정 심의

II. 회의내용

▷ 차의과학대학교 학칙 개정 심의

- 문창진 의장(이하 의장)이 의원정수 11명 중 8명이 참석하여 성원되었음을 보고하고 개회를 선언함
- 의장이 차의과학대학교 학칙 개정(안)을 상정하고 강창호 기획실장(이하 기획실장)에게 제안설명을 요청함
- 기획실장이 제38조 출석 제2항아래 각 호를 신설하여 조기취업자의 출석 인정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학칙 개정이 필요함을 설명함
- 오일숙 의원이 각 호에 대하여 질의함
- 이에 기획실장이 질병, 부상 등의 경우, 직계존속 및 형제, 자매 사망 등의 사유, 조기 취업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였음을 설명함
- 아울러 출석 인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함을 설명함

▷ 의학전문대학원 학칙 개정 심의

- 의장이 의학전문대학원 학칙 개정(안)을 상정하고 기획실장에게 제안 설명을 요청함
- 기획실장이 의학전문대학원 학칙 제5조(지원자격), 제6조(지원절차), 제7조(전형 방법), 제8조(입학허가 및 취소), 제14조(의사국가고시 응시), 제17조(복학), 제18조(자퇴), 제20조(학년, 학기), 제21조(수업일수), 제21조 2(휴업일), 제23조(수강 신청), 제25조(시험), 제30조(학기), 제31조(수업일수), 제31조 2(휴업일), 제34조(교육과정), 제35조(임상실습 과정 등록), 제36조(임상실습 과정 등록), 제37조(학위 논문 양식), 제38조(심사위원), 제39조(학위논문 심사), 제40조(구슬심사), 제 41조(심사의결), 제43조(공개발표), 제44조(학위논문 제출부수), 제45조(학위수여자격), 제50조(조직), 제51조(부설기관 및 연구소)의 개정안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함
- 최근영 의원이 개정 사유에 대하여 질의함
- 이에 기획실장이 현재 조직 및 직제를 반영하고 법령 및 학칙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그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함임을 설명함

▷ 제대학원 학칙 개정 심의

- 의장이 제대학원 학칙 개정(안)을 상정하고 기획실장에게 제안 설명을 요청함
- 기획실장이 제대학원 학칙 제1조(목적), 제6조(지원절차), 제10조(정원외 입학), 제11조(입학허가 및 취소), 제12조(등록), 제15조(등록금의 반환), 제16조(장학금), 제18조(학기), 제19조(수업일수), 제20조(휴업일), 제21조(지도교수), 제23조(신청 가능 학점), 제26조(수업시간), 제37조(휴학), 제45조(재응시), 제52조(논문심사), 제61조(학위수여요건), 제62조(논문 대체 출업), 제63조(조기출업), 제78조(징계), 제79조(조직), 제80조(위원회의 구성), 제81조(위원회 심의사항), 제82조(위원회의 의결), 제84조(원우회 구성), 제85조(내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함,
- 김진경 의원이 학칙 개정 사유에 대하여 질의함
- 기획실장이 제대학원 법령 및 규정 변화에 따른 내용 및 학칙의 전반적인 문구 수정을 반영한 것임을 설명함
- 이에 참석한 모든 의원이 본안을 항목별로 논의한 바, “모든 항목이 적정하게 산정 되었다”고 의견을 표하고,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권고하다.
- 의장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견 없음을 확인한 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함

III. 폐회선언

- 의장은 기타 논의 사항이 없음을 확인하고 폐회를 선언함

확인	의원	서명	의원	서명
	문창진	문창진	정광희	정광희
	김진경	김진경	황태선	황태선
	임지영	임지영	박재범	박재범
	오일숙	오일숙	최근영	최근영
	최설		배진진	
	장용석			